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235호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정안

1. 제안이유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보안심사를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942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용,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관리기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신청자”, “공개제한 공간 정보 이용자”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

나. 보안심사 기준(안 제4조, 별표1)

관리기관이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에는 별표 1의 보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토록 규정

다. 보안심사의 신청(안 제5조, 별지서식1)

신청자가 보안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라. 보안심사의 방법(안 제6조)

보안심사의 방법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정하고, 신청자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대책을 심사하도록 함

마. 심사결과의 통지(안 제7조, 별지서식3)

보안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안심사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보안심사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함

바. 사후관리 (안 제8조)

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기심사, 갱신심사, 변경심사,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사. 보안심사전문기관(안 제10조)

관리기관은 보안심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